

<http://dx.doi.org/10.17703/JCCT.2019.5.4.289>

JCCT 2019-11-35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에 관한 그림자규제와 시사점

Shadow Regulation of Online Copyright Protection and Its Implications

김호*

Ho Kim*

요약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됨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렇게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규제기능을 하는 그림자규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있다. 본고는 인터넷상 저작권보호에 관한 미국, EU 및 영국의 그림자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에게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율규제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필터링 기술 확보 및 적용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문제 해결, 필터링 과정에서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차단, 저작권 침해 의심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조치의 적절성 보장, 인터넷 업계와 저작권자간 협의과정에 인터넷 사용자의 참여 또는 감시 보장, 정부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그림자규제, 자율규제, 인터넷, 저작권 침해행위, 저작권 보호

Abstract Although regulation generally shall be based on the law, many regulations are not based on legislation. Shadow regulation that is not mandatory but functions as regulation may be developed and enforced by non-governmental body. This article examines shadow regulations of copyright protection online of the US, the EU and the UK and draws their implications for Korea. In case of self-regulation, the following factors shall be considered: to acquire the technology to filter copyright infringement and to solv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it,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freedom of expression, to ensur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anctions imposed on the alleged copyright infringement, to ensure the participation or monitoring of internet subscribers in the negotiation between the internet industry and copyright holders, and to clarify the government's role and responsibility.

Key words : Shadow Regulation, Self-regulation, Internet, Copyright Infringement, Copyright Protection

1. 서론

규제(regulation)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률에 의하여야 함이 원칙이다[1]. 그러나 현실에서는 행정지도, 유권해석, 지침 등의 이름으로 법령의 근거 없

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APEC-OECD는 미등록규제를 연성규제, 유사행정규제, 그림자규제 등으로 칭하고 있다[2]. 이에 따르면, 그림자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드러나지 않는 정부규제를 의미하며 그 예로는 행정지도, 지침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이 규제

*정희원,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전공 조교수
접수일: 2019년 9월 30일, 수정완료일: 2019년 10월 30일
게재확정일: 2019년 11월 6일

Received: September 30, 2019 / Revised: October 30, 2019
Accepted: November 06, 2019

*Corresponding Author: hufsho@kmu.ac.kr

Major in International Commerce, Keimyung Univ, Korea

를 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효성 면에서 볼 때 민간기관도 규제기능을 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3]. 따라서 그림자규제를 정부규제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민간에 의한 규제도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실제 규제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림자규제의 범위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민간기관에 의한 규제의 예로는 정부와의 공동규제(co-regulation), 자율규제(self-regulation), 유사행정규제(quasi-regulation) 등을 들 수 있다[4]. 공동규제는 정부가 제공한 법적 기반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체계를 만들고 집행하는 것이고, 자율규제는 민간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제체계를 만들고 그 집행에 관해 책임을 진다[5]. 유사행정규제는 정부규제, 공동규제, 자율규제 이외의 모든 민간기관의 규제를 의미한다[6]. 이러한 바탕에서 그림자규제의 포섭범위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 법적 구속력 없는 정부규제, ② 법적 구속력 없는 공동규제(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공동규제에 가까운 유사행정규제), ③ 정부의 개입을 막기 위해 산업계가 먼저 자율규제한 경우(정부가 자율규제를 준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자율규제에 가까운 유사행정규제), ④ 자율규제(민간이 자체적으로 규제를 만들고 이를 집행할 책임과 권한을 모두 가지며 정부의 개입이 없음)

그러나 그림자규제는 그 범위가 넓은 뿐만 아니라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 또한 다양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림자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는 금융(은행권에 대한 행정지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주식시장(리츠의 상장예비심사절차), 인터넷상 저작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그림자규제의 의의에 관하여 이상에서 살펴 본 바를 바탕으로 인터넷상 저작권보호에 관한 미국, 유럽연합 및 영국의 그림자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인터넷상 저작권 보호에 관한

그림자규제

1. 미국의 경우

그림자규제를 통한 저작권 보호의 집행방법은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그림자규제의 예로서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규율하기 위한 인터넷 업계 기업들 간의 자발적 합의(기준, 지침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림)

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저작권 보호 행정의 집행은 경우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를 통해 규율해 왔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웹사이트 경우 그동안은 웹사이트에 올려진 저작권법 위반 파일에 관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 위반에 대해 해당 웹사이트에 공식적인 통지를 할 때까지는 법의 보호를 받아왔다.

수년 전에는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외국 인터넷 사이트를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Stop Online Piracy Act (SOPA)와 PROTECT IP Act (PIPA) 법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무엇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불법 사이트의 퇴출 외에 정치적 의견 등을 포함한 엄청난 양의 합법적인 콘텐츠까지도 규제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여러 비정부기구의 반대에 부딪쳐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법률을 새로 제정하기보다는 업계 내부에서 저작권 보호기준을 마련하거나 이에 관한 자율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규율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다. 즉, 인터넷 업계의 기업들은 법에 따른 의회나 법원의 승인 없이도 개인의 인터넷 사용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자율규제를 활발히 논의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그림자규제는 인터넷 사용자로부터 아무런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인터넷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적용된다는 점에 있다. 또한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이 차단되는 경우 접근가능한 구제수단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7].

2013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저작권 침해 경고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이 시행되었다. 저작권 침해 경고시스템은 유선인터넷 서비스 사용자 중 P2P 네트워크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 의심행위를 한 자를 식별하고 그에게 이를 통지하기 위한 절차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인간 파일공유서비스를 통해 배포하는 인터넷 사용자를 교육하고, 그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안내하며, 지속적인 침해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동 시스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자율규제의 일종이다. 2008년 당시 뉴욕주 법무부장관이던 Andrew Cuomo 뉴욕주지사는 아동포르노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하여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

공사업자들이 아동포르노물의 온라인 접속 차단에 합의하도록 주선하였다[8]. 미국 음반산업협회(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도 Cuomo에게 접근해 음악 저작권 침해 사용행위(music piracy) 문제를 호소하였다. 이후 Cuomo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들과 음반, 영화산업계 간의 초반 협의를 이끌었고 2011년 이들간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7월 백악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미국 음반산업협회, 미국 영화산업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internet service providers)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저작권 침해 경고시스템의 운영을 담당할 저작권정보센터(Center for Copyright Information: CCD)의 창립이 자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행정의 집행을 조장한다는 행정부의 전략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조치"라며 환영하였다[9]. 저작권 침해 경고시스템이 시행되기 시작한 2013년 3월에는 백악관이 동 시스템의 형성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밝힐 수 있는 문서 및 서신의 공개를 요구하며 한 시민단체가 오바마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를 Washington D.C. 연방법원이 기각하였는데, 정책 채택 이전 논의과정의 문서에는 최종 결정시 고려되지 않은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는 바 이것이 외부에 공개된다면 최종 결정시 고려되지 않은 사항들이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정책 채택 이전 논의과정의 문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각각의 이유였다[10]. 그러나 Joe Biden 부통령과 Victoria Espinel 지식재산권 보호행정 집행관(U.S.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이 업계의 합의를 압박하는 등 이 시스템의 형성에 미국 정부의 역할이 상당하였다고 알려져 있다[11].

저작권 침해 경고시스템은 six strikes program이라 불리는 점진적 대응강화시스템을 채용하였는데, 먼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MarkMonitor로부터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행위를 추적 감시한 결과를 제공받아 인터넷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의심행위를 통지하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5회 경고 후에는 당해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할 때까지 당해 사용자의 인터넷 속도를 낮추거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제재를 포함한 이른바 감쇄조치(mitigation measures)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12].

두번째까지의 경고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인터넷 계

정이 저작권 침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 통보, 장차 범위만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 설명, 합법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안내를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추가 경고가 발송되는데, 이 때 발송되는 경고는 경고를 클릭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가 경고를 인지하도록 하였다. 다섯번째 경고가 발송된 후에도 침해 의심 행위가 계속되는 때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장래의 침해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감쇄조치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인터넷 속도의 일시적 저하, 인터넷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 의심행위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인터넷 서비스제공자를 접촉하거나 저작권에 관한 교육정보를 검토할 때까지 특정 웹페이지로 자동 이동, 기타 인터넷 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침해 의심행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포함하였다.

저작권 침해 경고시스템은 고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것이고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상에서의 활동에 보다 더 개입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13]. 그러나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먼저 이 시스템은 자율규제로서 시스템 창설시 인터넷 사용자들을 배제하여 사용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14]. 기술적인 문제로서 동 시스템은 BitTorrent 추적장치를 통해 오직 P2P 트래픽만을 감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것도 업로드만 감시대상으로 하였다[15]. 이 시스템의 제재가 인터넷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즉, 이러한 시스템은 인터넷 사용자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익명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자를 막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16]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점[17], 그리고 인터넷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현 상황에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 사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가혹한 제재라는 점이[18] 지적되었다.

이 시스템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사용자간 분쟁발생시 입증책임은 전환하여, 인터넷 사용

자가 부과된 제재의 철회를 위해 자신의 허락없이 자신의 계정이 사용되었다는 등 특정된 책임 면제사유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19]. 그러나 완벽하지 못한 시스템이 추적한 결과에 따른 제재에 대하여 인터넷 사용자가 제재의 부당함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규제는 충분한 여론 수렴 및 토의과정을 거쳐 법률을 통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지만, 이 시스템의 형성과정을 보면 충분한 여론 수렴 및 투명한 토의과정 없이 저작권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들간의 비밀 협의의 결과로 이 시스템이 형성되었고 그 형성과정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부가 막후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 시스템과 관련한 문제 발생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다.

2. 유럽연합(EU)의 경우

유럽연합의 경우 웹사이트들이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는 파일을 필터링하는 것에 관해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어 최근 유럽의회를 통과하였다. 본법의 명칭은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지침(Directiv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 96/9/EC and 2001/29/EC: 약칭 EU Copyright Directive)’이다[20]. 본법은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시장 측면에서 볼 때 유럽연합을 단일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비록 공식명칭이 지침(directive)이기는 하지만 유럽연합에서 directive는 유럽의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므로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이라고 칭하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들은 앞으로 2년 내에 자국에서 본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본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적절한 국내입법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저작물의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규정은 ‘링크세(Link Tax)’로 불리는 제15조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Online Content-Sharing Service Provider: OCSSP)들

에게 저작권 보호조치와 관련된 강화된 의무를 부과하는 제17조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 제5항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언론출판물에 이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언론출판인이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자(Information Society Service Provider: ISSP)로부터 받는 수익의 정당한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ISSP의 링크세 부담을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7조는, ISSP 중 OCSSP가 자신의 서비스에서 저작물을 공유하거나 대중에 공개하려면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제1항),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 이러한 허락은 OCSSP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가 상업적 기반에서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는 한 공유서비스 이용자의 공유 등 저작물 사용행위까지 확장되며(제2항), 이러한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 OCSSP는 허락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자신의 공유서비스에서 그 저작물이 공유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저작권자가 통지한 저작물을 자신의 공유서비스에서 제거 또는 차단하기 위하여 신속히 행동하였고, 장차 업로드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저작물의 허락 없는 공유 또는 공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나(제4항), 저작물을 인용, 비판, 검토, 캐리커처, 패러디 목적으로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에 업로드하는 것은 허용되고(제7항), 본조는 어떠한 일반적인 감시의무도 부여하지는 않는다(제8항)는 것이다.

이 법의 배경에는 업계와 저작권자 사이의 계약을 통해서 규율하는 것이 법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신속하고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법률을 통해 업로드 파일 필터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을 정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며 여론을 수렴하여야 하거나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므로, 입법자 입장에서는 관련 업계와 저작권자 사이의 계약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회피할 수 있고, 업계로서는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상황을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환경의 콘텐츠 규제체계를 이렇게 업계와 저작권자의 계약을 통해서 구축하게 되면, 그것은 법률에 의한 규제보다 투명하지 않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은 규제체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피할 수 없다. 또한, 이 법은 온라인 콘텐츠 공유서비스

제공자와 저작권자간 협의상황을 인터넷 사용자단체가 감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7조 제10항)는 점에서 미국의 자율규제보다 진일보한 입법으로 보일 수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적절한 필터링 기술을 확보하여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재정적 문제가 존재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3. 영국의 경우

영국은 2010년 Digital Economy Act를 통하여 인터넷 활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기도 하였으나 이해관계자들과 일부 시장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나타나자, 정부의 직접규제보다는 업계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선회하여 미국의 Copyright Alert System을 모델로 Voluntary Copyright Alert Programme (VCAP)을 시행하려 하였다[21]. 그러나 그 시행이 지연되다가, Creative Content UK (CCUK) initiative의 일환으로 이전보다 다소 변형된 'Get it Right from a Genuine Site campaign'을 2017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22]. 이 프로그램에서는 인터넷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저작물 파일 공유로 저작권 침해 의심행위에 대해 경고를 받는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인터넷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임을 고지하는 교육적 차원의 제도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시도되었다[23].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Copyright Alert System과는 달리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인터넷 사용을 정지시키지는 않는다.

이 프로그램은 저작권자의 대리인이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일반 기업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고 그들이 수집한 결과가 저작권 보호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

III. 결 론

인터넷의 광범위한 이용에 따라 기존보다 강화된 저작권 보호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법률로 규정하려면 기술적, 법적, 시간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발

생하므로 구미에서 인터넷 업계가 저작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필터링 방법에 합의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를 단속하는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이 분야에 관하여 미국, 영국, 유럽연합과 같은 규제 논의가 활발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를 법률로 규정하려면 구미에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우리 대법원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와 관련하여,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삭제 및 차단 요구를 받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해석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방조책임을 부정하는 판결(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을 내렸는데, 최근 통과된 유럽연합 지침이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면 우리의 저작권 보호제도도 자율규제 등 그림자규제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서 살펴 본 구미의 제도가 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장차 우리의 제도 운영시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구미 선진국들의 제도 정착시 우리나라에서도 장차 인터넷 업계 차원의 자율규제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자율규제는 한번 마련되면 되돌리기 쉽지 않으므로 업계의 자율규제 추진시 최소한 정부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가이드라인은 유럽연합 지침과 같이 저작권 보호의무, 보호범위, 면책요건 등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율규제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필터링 기술 확보 및 적용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이에 관하여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필터링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차단, 저작권 침해 의심행위에 대해 인터넷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재조치의 적절성 보장, 인터넷 업계와 저작권자간 협의상황에 인터넷 사용자의 참여 또는 감시 보장 등에 관한 내용과 정부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B. S. Choi, "Reclassifying Regulatory Instruments and Options,"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47, No. 2, p. 2, June 2009.
- [2] APEC, and OECD, APEC-OECD Integrated

-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 APEC and OECD, p. 7, 2005.
- [3] Y. S. Choi, Study on the Actual Utilization of Alternative Regulatory Strategies in Korea,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p. 2, 2013.
- [4] S. Kim, and J. S. Choi, "Comparative Research on Quasi-regulation among Australia, US and Korea,"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 Vol. 26, No. 2, pp. 6-10, December 2017.
- [5] 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 Classification-Content Regulation and Convergent Media. Australian Government, pp. 304-305, February 2012.
- [6] Commonwealth 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Quasi-regulation., Grey-Letter Law, Australian Government, pp. 1-10, December 1997.
- [7]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Shadow Regulation. <https://www.eff.org/ko/taxonomy/term/11403>.
- [8] B. Sisario, "To Slow Piracy, Internet Providers Ready Penalties," The New York Times, July 7, 2011. https://www.nytimes.com/2011/07/08/technology/to-slow-piracy-internet-providers-ready-penalties.html?_r=0.
- [9] V. Espinel, "Working Together to Stop Internet Piracy," The White House, July 7, 2011.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blog/2011/07/07/working-together-stop-internet-piracy>.
- [10] C. Farivar, "Federal court: Obama admin doesn't need to release more 'six strikes' documents," Ars Technica, March 29, 2013. <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13/03/federal-court-obama-admin-doesnt-need-to-release-more-six-strikes-documents/>.
- [11] E. Van der Sar, "Joe Biden Pushed For 'Six Strikes' Anti-Piracy Plan, IFPI Says," TorrentFreak, April 8, 2013. <http://www.informationliberation.com/?id=43453>.
- [12] T. Klosowski, "The Copyright Alert System: How the New 'Six Strikes' Anti-Piracy Program Works," lifehacker, February 26, 2013. <https://lifehacker.com/the-copyright-alert-system-how-the-new-six-strikes-a-5986961>.
- [13] J. Flint, "Entertainment giants and broadband providers team up on piracy effort," Los Angeles Times, July 7, 2011. <https://latimesblogs.latimes.com/entertainmentnewsbuzz/2011/07/entertainment-giants-and-broadband-providers-team-up-on-piracy-effort.html>.
- [14] C. McSherry, and E. Goldman, "The 'Graduated Response' Deal: What if Users Had Been At the Tabl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July 18, 2011. <https://www.eff.org/deeplinks/2011/07/graduated-response-deal-what-if-users-had-been>.
- [15]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The "Six Strikes" Copyright Surveillance Machine. <https://www.eff.org/issues/six-strikes-copyright-surveillance-machine>.
- [16]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The Copyright Alert System FAQ. <https://www.eff.org/deeplinks/2013/02/six-strikes-copyright-alert-system-faq>.
- [17] M. Stolz, "U.S. Copyright Surveillance Machine About To Be Switched On, Promises of Transparency Already Broken,"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November 15, 2012. <https://www.eff.org/deeplinks/2012/11/us-copyright-surveillance-machine-about-be-switched-on>.
- [18] C. McSherry, and E. Goldman, "The 'Graduated Response' Deal: What if Users Had Been At the Tabl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July 18, 2011. <https://www.eff.org/deeplinks/2011/07/graduated-response-deal-what-if-users-had-been>.
- [19] A. Bridy, "Graduated Response American Style: 'Six Strikes' Measured Against Five Norms," Fordham Intellectual Property, Media & Entertainment Law Journal, Vol. 23, No. 1, pp. 33-37, January 2013.
- [20] Council of the EU, EU adjusts copyright rules to the digital ag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9/04/15/eu-adjusts-copyright-rules-to-the-digital-age/>.
- [21] A. Orlowski, "UK's pirate-nagging VCAP scheme WON'T have penalties - report," The Register, May 9, 2014. https://www.theregister.co.uk/2014/05/09/uks_freetardnagging_vcap_wont_have_penalties_report.
- [22] LibertyShield.com, Get It Right Initiative - UK ISPs Sent 1 Million Piracy Emails. February 12, 2014. <https://www.libertyshield.com/blog/get-it-right-uk-isp-piracy>.
- [23] GOV.UK, Get It Right from a Genuine Site copyright campaign update. <https://www.gov.uk/government/news/get-it-right-from-a-genuine-site-copyright-campaign-update>